



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

농 립 부

□ 농정분야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	• 농지내 축사 설치 용이	• 농지의 정의에 축사부지는 포함되지 않아, - 농지내에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(신고)를 거쳐야 함.	• 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 전용허가(신고)를 거치지 않고 농지내에 축사설치 가능	• 농지법 (2006년 공포 및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예정)	농지과 (500-1670)
2	•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	• 지원대상 - 육지 : 전체면 경지경사도 14% 이상 - 도서 :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	•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,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오지면과 도서에 대해 기준 완화 - 육지 : 일반면 14%, 오지면 7% - 도서 : 전도서	• 농림사업시행지침개정 (미정)	농지과 (500-1672)

□ 축산분야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18	•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	•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실시 했으나, • 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·판매시 원산지표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	• 2007.1.1일부터 300m이 상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·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(한우·육우·젓소) 표시의무화 •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* 원산지·식육종류 모두 미표시 : 500만원, 원산지 미표시 : 300만원, 식육종류 미표시 : 100만원	• 식품위생법 (법개정 2005.12.23, 하위법령 2006년중 개정완료) • 2007.1.1일 시행	축산물위생과 (500-1926)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(031-440-9115)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일	관계부서
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산의무자 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두수 조사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의원 선출을 위해 의무자조금 도입 초년도와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,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결과로 같음 축산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최소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산물 의소비 촉진등에 관한 법률 (시행일 :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) ※ 현행 「축산물 의소비 촉진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명이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될 예정 	축산경영과 (500-1995)
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닭·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닭·오리고기 포장 자율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종류 : 닭, 오리고기 식육 대상영업자 :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호의 도축업 영업자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수 이상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7 	축산물위생과 (500-1923)
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익수의사 제도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〈신 설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공익수의사」 제도 신설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공익수의사 선발·운영(매년 150명) 현행 공중보건지사, 공익법무관 외에 공익수의사로 3년간 복무할 경우,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체 검역원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배치되며, 가축방역·축산물위생·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2006.3.24일 공포, 2006.9.25일부터 발효 공익수의사 선발·배치 등은 2007년부터 시행 	가축방역과 (500-1933)
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'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〈신 설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산업 등록 농가는 효율적인 방역 및 가축사양 관리 등을 위해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함. 동 사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산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'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'(농림부고시 제2004-8호, 2004.3.17) 시행일 : 2007.1.1 	축산정책과 (500-1900)

번호	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24	• 축산물의표시 기준강화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2005-10호: 2005.9.23)	가. 모든재료 원표시 •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원재료는 사용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 표시 나.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[별표1. 1. 가. (10). (가)] • 조제유류 영양소 표시 의무화	•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 표시 의무화 • 다소비 제품에 대한 영양소 표시 의무화 대상 6가지 추가(소시지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림류, 분유류)	• 축산물의표시 기준(2007.1.1) • 축산물의표시 기준(2007.1.1)	축산물안전과 (031-467-1962)

〈주요 농정시책별 내용해설〉

(1) 농지내 축사설치 용이

농림부 농지과 (☎ 02-500-1670)

- 농지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, 농지법 제2조(농지의 정의)를 개정하여 축사 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.
- 축사의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,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007년도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며,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.

※ 농지법 제2조1호 나목 개정(2006.12.7 국회본회의 통과)

- 향후, 축사부지를 농지정의에 포함시킴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(농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)할 계획이다.

(18)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

농림부 축산축산물위생과(☎ 02-500-1926)
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해야 하는 식육의 범위가 확대된다.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㎡ 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하고,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·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했다.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
-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.

-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,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,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(19)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

지자체의 축산통계조사 폐지

농림부 축산경영과(☎ 02-500-1995)

- 2007년부터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,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했다.
- 현재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대의원 선출시(초년도 및 4년 주기) 지역별 대의원 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을 조사·보고하도록 하고 있다.
- 이로 인해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는 경우, 시장·군수 등이 매년 실시되는 축산통계조사와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.
-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축산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(20) 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

농림부 축산물위생과(☎ 02-500-1923)

- 현재 닭·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, 도축이후 유

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1일 도축수 8만수 이상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.

-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우선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.
-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(21) 공익수의사제도 신설·운영

농림부 가축방역과(☎ 02-500-1995)

-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,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동·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‘공익수의사’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.
- 공익수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자로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이다.
-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가 대체된다.
 - ※ 유사 대체복무제도 : 공중보건의사(보건복지부), 공익법무관(법무부)
- 자격요건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며,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.
- 주요 업무는 ①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

및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, 질병
예찰, 병성감정, 혈청검사 등의 가축방역
② 원유·도축 검사, 가공장 위생관리, 축
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
③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등이다.

- 2007년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하여 2009
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
일선 현장에 배치·운영한다.
- 국방부에서 수의과대학 재학생 중에서 수
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관리하며, 공익
수의사에 선발된 자에 대해 4주간의 군사
교육을 실시하고, 가축방역 관련 직무교육
등을 마친 후 근무기관에 배치되어 복무하
게 된다.

(22) '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
사육기준' 시행
농림부 축산정책과 ☎ 02-500-1995

- 2007년 1월 1일부터 축산업 등록농가(한·
육우, 젖소, 돼지, 닭 사육업)는 농림부 고
시 '제 2004-8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
당 적정 가축사육기준' 을 준수해야 한다.
- 축산농가가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
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, 각
종 약품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
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-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
줄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, 국민들에게
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
수 있다.
- ※ '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
육기준' 은 농림부 고시 제2004-8호
(2004년 3월 17일 제정) 참조

※ '적정 가축사육기준' 을 준수해야 하는 축
산업등록 농가수는 전국적으로 55천호
(2006.3월말 현재)임. 한·육우 29.6천호,
젖소 8.8천호, 돼지 9.8천호, 닭 6.7천호

- 축산업등록 농가가 '적정가축 사육기준' 을
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47조에 따라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- 축산농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, 축사
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등 친환경을
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는 '가축사육시
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' 을 반드시
준수해야 할 것이다.

(23) 축산물의 표시기준

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
☎ 031-467-1962

- 2005년 9월 23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
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-
10호 ; 2005. 9. 23)에 따라 2007년 1월 1
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
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
표시해야 한다.
- ※ 예외 : 주표시면이 30cm²이하 제품은 많
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, 총
중량비율이 5%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
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
- 종전에는 조제유류만 영양소 표시를 의무
화 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소시지
류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유류, 아이스크
림류,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
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.
[별표1 제1호 가목 (8) (가)의 규정, 제1호
가목 (10) (가) 1) 및 2)]